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6. 7.(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• 과장 김은정, 사무관 송우영, 배한후, 박승민 • ☎ (044) 201-3856, 3858, 3860
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박균성 • ☎ (044) 201-3843
보도일시		2021년 6월 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「자동차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◆ (관련 사례)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,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.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,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(‘21.4.13, 10.14 시행)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\*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(41일간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\*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, 「자동차등록령」, 「자동차등록규칙」, 「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, 「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등 6개

### <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(‘21.4.13 개정, 10.14 시행) >

- ◎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
- ◎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
- ◎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
- ◎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
- ◎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(50→100만원 이하)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
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(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)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.

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

-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,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(100~300만원)한다.

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·과태료 부과기준 마련

- 자동차(부품)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(부품) 매출액의 100분의 2(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)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
-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(부품)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자동차 검사 시,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

-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(정기·튜닝·임시·수리검사 등)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검사 적합여부·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(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,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)으로 관리토록 한다.

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

-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(최대 30→60만원)한다.

⑥ 신조차(신차)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

-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,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,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(40일 이내)가 가능해진다.
-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“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,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  - “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,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 까지(41일간)이고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
  -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,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, 자동차운영보험과 / 전화번호: 044-201-3843, 3856, 3858, 3860 팩스: 044-201-5587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박균성 사무관(044-201-3843), 자동차운영보험과 송우영, 배한후, 박승민 사무관(044-201-3856, 3858, 38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